

<p>○구역현황</p> <p>—면 적 : 12,888㎡(사유지 10,762㎡, 국·공유지 2,126㎡)</p> <p>—건축 물 : 78동(유허가 66동, 무허가 12동)</p> <p>—가 구 수 : 226세대(가옥주 76세대, 세입자 150세대)</p> <p>—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 주차장정비 지구</p> <p>—동 의 율 : 토지 77%, 건물 82%</p> <hr style="border-top: 1px dotted black;"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출년월일 : 1995. 9. 6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</p>	<p>1.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</p> <p>2. 제안사유</p> <p>○노원구 월계동 748 외 3필지 10,666㎡ (구거부지 1,009㎡ 제외)는</p> <p>—월계근린공원과 국철(경원선)로 둘러쌓여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</p> <p>—도시계획도로(폭원 25m)로 구분되어 각각의 면적이 자연녹지지역 내 허가 가능한 자동차운전학원 최소면적(6,600㎡)에 미달되므로</p> <p>○도시계획도로 동측 공원용지 2,247㎡는 공원에서 해제하여 자연녹지지역에 포함하고</p> <p>○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 서측 자연녹지 5,056㎡(기부채납 예정)는 공원용지로 대체 지정하여 상호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하고자 함.</p>																	
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입안내용</p>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rowspan="2">시 설 명</th> <th rowspan="2">위 치</th> <th colspan="3">면 적(㎡)</th> <th rowspan="2">비 고</th> </tr> <tr> <th>변경전</th> <th>변경후</th> <th>증 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변경결정</td> <td>근린공원</td> <td>노원구 월계동 794 산 3-1</td> <td>1,621,000</td> <td>1,623,809</td> <td>증 2,809</td> <td>불합리한 공 원경계조정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 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	변경전	변경후	증 감	변경결정	근린공원	노원구 월계동 794 산 3-1	1,621,000	1,623,809	증 2,809	불합리한 공 원경계조정
구 분	시 설 명			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									
		변경전	변경후	증 감														
변경결정	근린공원	노원구 월계동 794 산 3-1	1,621,000	1,623,809	증 2,809	불합리한 공 원경계조정												
<p>4. 참고사항</p> <p>○도시계획상 : 자연녹지지역</p> <p>○공람공고 의견접수 : 없음.</p> <hr style="border-top: 1px dotted black;"/>		<p>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제출년월일 : 1995. 9. 6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</p>																
<p>1. 개 요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 치</th> <th colspan="2">용도지역변경</th> <th rowspan="2">면적 (㎡)</th> <th rowspan="2">비 고</th> </tr> <tr> <th>당 초</th> <th>변 경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마포구 합정동 414, 416 일대</td> <td>일반주거지역</td> <td>일반상업지역</td> <td>51,400</td> <td rowspan="2">합정 지구중심</td> </tr> <tr> <td>준주거지역</td> <td>일반상업지역</td> <td>3,6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위 치	용도지역변경		면적 (㎡)	비 고	당 초	변 경	마포구 합정동 414, 416 일대	일반주거지역	일반상업지역	51,400	합정 지구중심	준주거지역	일반상업지역	3,600		
위 치	용도지역변경		면적 (㎡)	비 고														
	당 초	변 경																
마포구 합정동 414, 416 일대	일반주거지역	일반상업지역	51,400	합정 지구중심														
	준주거지역	일반상업지역	3,600															
<p>2. 상정사유</p> <p>○마포구청 합정사거리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(합정지구중심)의 하나로 이 지역을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킴은 물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</p>		<p>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결정코자 함.</p> <p>3. 참고사항</p> <p>○현재의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</p> <p>○주민 의견청취 결과 : 의견없음.</p>																